

제 20 호 2018년 상반기  
[2018. 1. 1.~ 2018. 6. 30.]

# 의정소식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구민 복리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 CONTENTS

- 04 의원현황 및 정수
- 05 복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6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주요 의정활동  
제171회 임시회  
제172회 임시회
- 12 현장속으로
- 14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 19 2018년 상반기 포토의정
- 24 2018년도 복구의회 회기 일정
- 25 복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26 어린이 모의의회 참여자 모집 안내
- 27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

표지설명 | 매곡도서관

---

발행일 | 2018년 상반기 제20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복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복구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3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



# | 의원현황 및 정수

## ▣ 제6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 의장

성명 정복금  
연락처 010-3446-2002  
선거구 비례대표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성명 강진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 의원

성명 안승찬  
연락처 010-6587-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임기 : 2014. 7. 1. ~ 2018. 4. 11.  
“주민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북구로 가꾸겠습니다.”



### 의원

성명 이상욱  
연락처 010-5535-2362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여가와 문화가 풍성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 의원

성명 이수선  
연락처 010-2833-1929  
선거구 농소2·3동

“주민이 행복한 사람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 의원

성명 백현조  
연락처 010-3801-8364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건강하고 활기찬 북구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 의/원/정/수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7	2	2	2	1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 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 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의회 조직





# 2018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회기운영 현황 (2018. 1. 1. ~ 6. 30.)						
구 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18년 상반기	3	26	3	26	-	-

안건처리 현황											
회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71회 (2018.1.29.~2.28.)	11	17	0	0	7	0	0	2	2	1	5
제172회 (2018.3.27.~4.9.)	14	13	2	0	6	0	0	0	0	1	4
제173회 (2018.5.15.)	1	1	0	0	0	0	0	0	0	0	1
<b>합 계</b>	<b>26</b>	<b>31</b>	<b>2</b>	<b>0</b>	<b>13</b>	<b>0</b>	<b>0</b>	<b>2</b>	<b>2</b>	<b>2</b>	<b>10</b>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1회 | 임시회

2018. 1. 29. ~ 2. 8. (11일간)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1월 29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복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1년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보고 받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업설명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등을 심의했다.



# 의 | 정 | 활 | 동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2회 | 임시회 2018. 3. 27. ~ 4. 9. (14일간)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3월 27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박천동 북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복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을 보다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강진희 부의장은 ‘매곡공원 축소계획 철회하고 조기 조성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제172회 임시회는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6건 등을 심의했다.



#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제171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육 의원]**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수선 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강진희 의원]**  
 ※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이상육 의원]**  
 ※ 관내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 원안가결 **[이수선 의원]**  
 ※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 부결 **[백현조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제172회 |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및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안승찬 의원]**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 사항을 수렴하여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원안가결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선발기준, 업무처리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된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 12. 26.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된 세액공제 요건에 전자송달 방식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현 | 장 | 속 | 으 | 로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및 자원봉사활동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의원들은 2월 8일 오후 관내 복지시설인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과 온유와 감사의집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과일 및 생활용품 등을 설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정복금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설날을 맞이하여 관심과 온정이 그리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어울림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조립 자원봉사활동도 펼친 북구의회 의원들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내 시설 및 어려운 이웃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 현 | 장 | 속 | 으 | 로



## 북구의회, 관내 주요추진사업 현장 점검

북구의회(의장 정복금)는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3월 29일 관내 주요추진사업인 염포운동장 조성공사 현장 및 강동문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의원들은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북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 주민의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활용도가 높은 문화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 단계에서부터 여러 제반사항을 면밀히 살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염포운동장은 염포동 377번지 일원에 39억을 투입해 축구장, 다목적구장, 주차장(43면) 등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강동 지역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강동문화센터는 강동산하지구 일원에 48억을 투입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 구.정.질.문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 질문일시 : 제171회 임시회(2018. 1. 29.)
- > 질문요지 : 북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 북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Q. 북구 체육회 회장인 박천동 구청장은 북구 체육회 소속으로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14명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였는지요?**

A. 2017년 근무평정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18조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14명에 대해 평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Q.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습니까?**

A. 생활체육지도자 평정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18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Q. 근무성적 평정표 중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를 0점 처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A.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별지 제3호에는 평정요소, 배경, 평정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평정요소 중 근태관리 및 현장평가 항목의 점수기준에 감점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 생활체육지도자 근무평정 시 체육회 사무국에서 요약한 근태관리현황표와 별지 제3호 점수기준에 근거하여 평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Q. 북구 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0점 처리하였는지요?**

A. 사무국장 1차 평정은 근태관리기록부 및 근태관리현황표 등을 기준으로 평정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요약한 근태관리현황표를 참고하여 평정하였습니다.

**Q.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하지 않고, 해당 지도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이 사실입니까?**

A. 생활체육지도자 평정 후 근무성적 평점 70점 미만인 지도

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 체육회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해당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원회 개최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절차의 흠결을 인지하여 해당 사항을 당사자에게 3회 고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규정에 의거하여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Q. 규정을 어긴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며, 이후 절차의 흠결을 인지하고 최종적으로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근무성적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태관리기록부’를 잘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수업을 받는 회원들의 담당과 면담이 있는 후에 근태관리기록부에 ‘출근지각’이라는 글자를 10개 적어 공문서를 위조했던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태관리기록부”와 “생활체육지도자 근태현황표”로 관리하여 왔으며 2017년 12월 근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근태관리기록부 비고 부분에 지각 및 조퇴 등의 사항을 이기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도적인 공문서 위조가 아닌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Q. 2017년 5월경 해당지도자에게 000금고에 요가 수업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A. 따로 보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생활체육지도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북구 체육회 이사장을 역임한 000금고에 수업을 강요한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Q. 생활체육지도자는 비록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많게는 20년 가까이 우리 북구에서 일한 사람들이고 모두 스포츠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너거, 니, 해라’ 반말을 통상적으로 하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은 엄연히 폭언인데, 이에 대해 체육회 회장으로서는 답변 바랍니다.**

A.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부터 많게는 20여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식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반말, 폭언 등은 직원 사기 저하 및 능률향상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회장으로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체육회 사무국 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Q.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의하면 위원은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학계도 없고 주무부처 담당관도 없고, 외부 전문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지도자에게 부당해고를 한 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A.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3조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4월 당시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해당 사무국장이 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시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1일 개최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은 의결 요구권자로서 참석하였으며,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확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추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Q. 본의원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박천동 구청장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체육회 회장에서 사퇴하고, 사무국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A.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들이 체육회가 아직 행정적으로 기대 못 미치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점을 엄중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구 체육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업무 및 행정능력을 배양하여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서·면·질·문

구청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 >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 > 질문일시 : 제171회 정례회 (2018. 2. 1.)
- > 질문요지 :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시 도로 및 통과박스 설치 관련

##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시 도로 및 통과박스 설치 관련

**Q. 산업로 확장공사 시 3개천(신천천, 이화천, 약수천) 도로 밑으로 통과 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의원님께서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시 도로 및 통과박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85,580백만원(국비 42,790, 시비 42,790)으로 2016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9월 준공 예정인 도로확장[L=4.63km, B=20→30m(6차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이화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등 위험한 산업로를 횡단하여 등·하교하고 있는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구간(이화천, 약수천, 매곡천) 내 도로하부 통과박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행중인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이화천, 약수천, 매곡천 구간의 도로하부 통과박스 설치를 수차례 건의(서면협의 3회, 방문협의 등 5차례)하였으며 울산광역시로부터 약수천 및 이화천 구간은 기존 통행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량하부 통행로 설치가 기 설계 반영되었으며, 매곡천 구간은 교량 재가설 후 단절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연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8. 2. 13.(화) 현장방문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한 이화천 구간 내 기 계획된 통행로 외 별도의 도로횡단 통과박스의 설치에 현장 확인한 바와 같이 토지 추가 보상, 송유관 및 가스관, 상수관의 지하매설물 저축에 따른 이설, 소요 사업비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과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승인절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및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이화천 구간에 대한 도로하부 통과박스 설치가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안승찬 의원
- > 발언일시 : 제171회 임시회 (2018. 1. 29.)
- > 발언요지 : 울산시는 버스공영제 실시로 주민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울산시는 버스공영제 실시로 주민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울산 북구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울산의 다른 구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북구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공동주택단지가 건립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봅니다. 지금도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입주 예정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좋아하고 있지만 하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늘어난 인구가 울산 북구에 정주하도록 해야 하고 또 다른 인구가 유입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현재 인구가 20만이지만 이후 인구가 더 늘어나도록 도시 전체를 점검하고 계획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 교육, 문화, 교통, 생활체육 등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 요청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 신설과 안전·도로·대중교통·환경문제 등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우리 북구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울산시와 교육청 사무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에 더욱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기되는 교육·문화·체육·휴양시설 등 많은 민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이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 항상 “울산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는 말만 수백 번 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고 주민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장님과 울산시에 조금이나마 저의 마음을 전달하고 울산시 대중교통정책이 전체적으로 점검되고 바뀌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주택단지에는 반드시 대중버스 노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사 와서 살게 되면 당연히 교통 및 이동수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행정에서는 대단지 주거지역 구성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차 없이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겨우 버스 2대 증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 자가용이 늘어나고 주차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혁신으로부터 주차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연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무료버스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 북구는 신설 이후 농소3동, 화봉지구, 매곡지구, 호계지구, 호수지구, 강동 산하 지구, 송정지구까지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족하지만은 오토밸리로, 농소 옥동간 도로, 7번국도 확장 등 주요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재작년에 버스 2대 증차된 것 외에는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의 울산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인구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살기 좋은 울산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전한 울산과 함께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및 주민 휴식 문제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과 논의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대담하게 버스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20년 전 광역시가 되기 전의 울산 대중교통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울산광역시에 맞는 대중교통정책을 세우고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거동에서 방어진, 무거동에서 모화로 가는 버스 노선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인구 변화와 증가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통정책이 필요하기에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완전 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울산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공론의 계기가 되고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 > 발언일시 : 제172회 임시회 (2018. 3. 27.)
- > 발언요지 : 매곡공원 축소계획 철회하고 조기조성하라

## 매곡공원 축소계획 철회하고 조기조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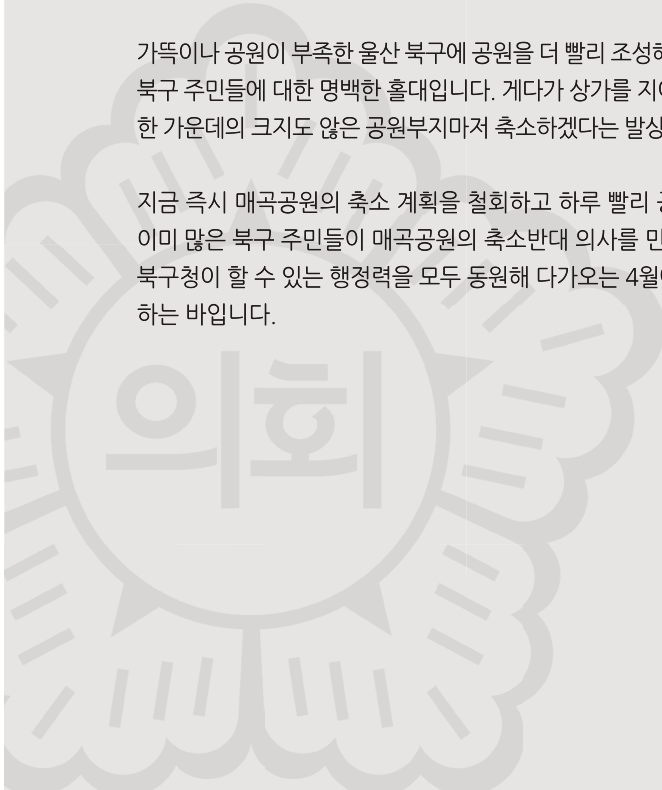
매곡초등학교 앞에 조성될 매곡공원 조성계획이 축소되어 공원기능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울산시는 매곡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변경안」을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매곡공원의 기존 부지계획이었던 11,400㎡ 중 1,909㎡ 축소하여 9,491㎡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소를 발표한 부지는 산골 연못 부분을 제외한 전체 60% 중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부지입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상가가 들어오면 나머지 부지도 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매곡공원의 축소 이유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적소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원, 도로, 유원지, 향만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개인이 저마다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공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 1일에 일시에 해제된다고 해서 ‘공원 일몰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핑계로 매곡공원의 부지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은 울산시와 북구청이 지금껏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지주의 요청에 끌려가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울산시와 북구청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까지의 아직 2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며, 지주에 대한 특혜의혹이 생길 소지마저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원이 부족한 울산 북구에 공원을 더 빨리 조성해주지는 못할망정 축소하여 실질적인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북구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홀대입니다. 게다가 상가를 지어 막대한 수익을 남길 지주만을 위해서 인근 학교와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의 크지도 않은 공원부지마저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즉시 매곡공원의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공원을 조성하여 북구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많은 북구 주민들이 매곡공원의 축소반대 의사를 민원창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주민의 뜻을 수용하고 울산시와 북구청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다가오는 4월에 개최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 2018년 상반기 포토의정



2017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2018. 1. 16.)



2018 북구의회 의원·직원 합동연수 (2018. 1. 17.)



제3대학 제1기 입학식 (2018. 3. 6.)



## 2018년 상반기 포토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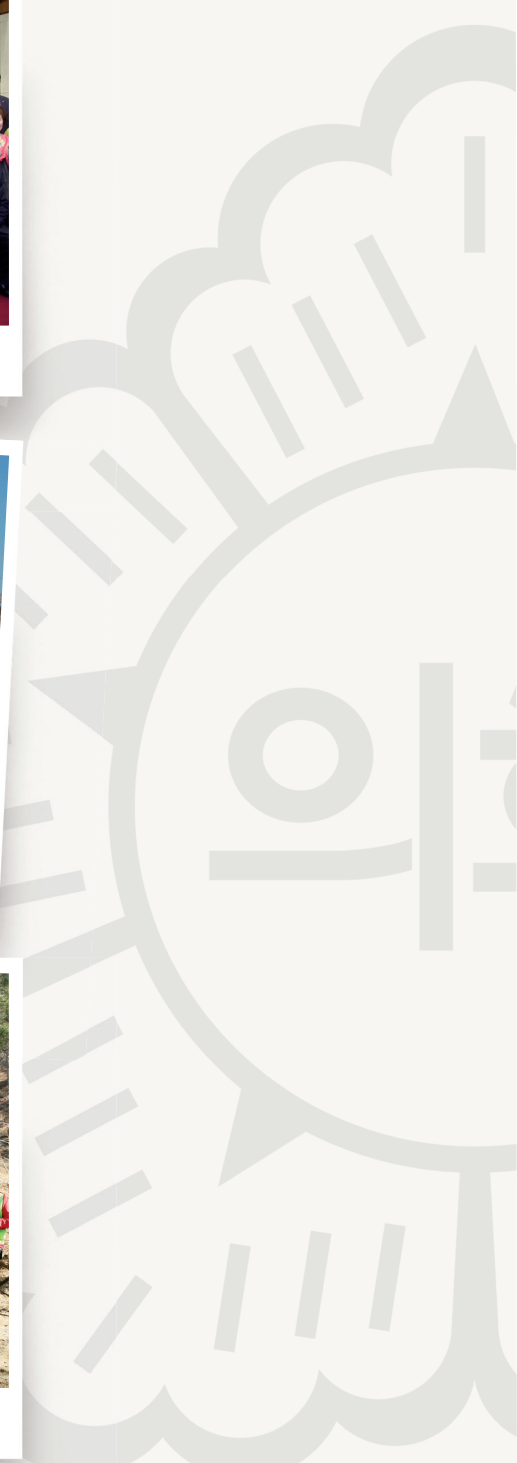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2018. 3. 8.)



정자활어직매장 건립 기공식 (2018. 3. 3.)



제73회 나무심기 행사 (2018. 3. 23.)



# 2018년 상반기 포토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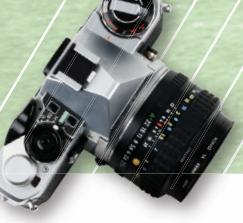
농소 6.25 전문군경 합동 위령제 (2018. 4. 6.)



제3회 북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2018. 4. 28.)



제15회 효문동 동민한마음 체육대회 (2018. 4. 29.)



# 2018년 상반기 포토의정



외부리소리 학술 심포지엄 (2018. 5. 4.)



북구 어린이 콩잔치 (2018. 5. 5.)



2018 북구의 책 선포식 (2018. 5. 8.)



# 2018년 상반기 포토의정



봄꽃프레 이야기 개관식 (2018. 5. 11.)



제14회 울산외부리축제 (2018. 5. 11.)

## | 2018년도 복구의회 회기 일정 |

연간 회기일수 : 100일 이내

### ○ 정례회 : 2회 50일 이내

정례회	회 기	일수	안 건	비고
계	2회	47		
제177회 (제1차)	10. 5.(금) ~ 10. 19.(금)	15	·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 ·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 · 부의안건 심의· 의결	
제178회 (제2차)	11. 20.(화) ~ 12. 21.(금)	32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9일간) ·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 부의안건 심의· 의결	

### ○ 임시회 : 매회기 15일 이내

정례회	회 기	일수	안 건	비고
계	6회	51		
제171회	1. 29.(월) ~ 2. 8.(목)	15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청취) · 결산검사위원 선임 · 부의안건 심의· 의결	
제172회	3. 27.(화) ~ 4. 9.(월)	14	·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 부의안건 심의· 의결	
제173회	5. 15.(화)	1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제174회	7. 2.(월)	1	· 7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제175회	7. 17.(화) ~ 7. 26.(목)	10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청취) · 부의안건 심의· 의결	
제176회	8. 28.(화) ~ 9. 10.(월)	14	·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 부의안건 심의· 의결	

※ 회기는 안건 제출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 북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북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 서비스 내용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접속경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 짝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 어린이 모의의회 참여자 모집 안내 |

울산 북구의회에서는 21세기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 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체험하는 모의의회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모집기간	'18. 7. 25. ~ 8. 3.(10일간)
○ 추진일정	'18. 8. 7.(화) ~ 8. 10.(금) (4일간) 오전 10:00~11:30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장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참가대상	북구 관내 초등학생(4~6학년) / 회별 15명 내외
○ 접수방법	팩스(241-8979) 또는 이메일(kki1998@korea.kr)
○ 주요내용	의원역할 체험(안건상정,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등), 수료증 수여

### ▣ 신청관련 유의사항

- 모의의회 참가 신청은 모집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서는 팩스 및 메일로 접수
- 신청 단체(개인)가 많은 경우 접수순에 의함
- 의회 일정을 우선적으로 감안, 신청 단체(개인)의 형편에 따라 결정

※ 참가자에 대한 차량 및 급식 등은 의회에서 제공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 북구 의회사무과 (☎241-8975)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새시대를 열어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5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